

13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  
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조례내용을 정비하여 청소행정 다변화에 대응
- 재활용품 혼합배출·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 시행 관련 재활용품 품목을 조정하고 배출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용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삭제(안 별표 3)
- 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미수정 사례 정비
  - 청소행정평가위원회 위원 : 복지환경국장 → 시민친화국장
- 다.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개정(안 별표 1)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02-3396-5486, 02-3396-5464, 팩스 : 02-3396-8754, 02-3396-8750, email : myjworld@junggu.seoul.kr, ym20@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제2호 “복지환경국장”을 “시민친화국장”으로 한다.

별표 1(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종량제봉투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당시 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

## 재활용가능용품 배출방법

품목	세부품목	분리 배출 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li> <li>-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li>※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li> </ul>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li> <li>-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li> <li>-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li> </ul>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ul>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종이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li> </ul>
<p>3. 유리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수병, 기타 병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li> <li>-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li>-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li> <li>※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li> </ul>
<p>4. 금속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주류캔, 식료품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li> </ul>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li> <li>※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li> <li>※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li> </ul>
5.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6.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I)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 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li>-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li> <li>※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li> </ul>

<p>8. 합성수지 비닐류</p>	<p>·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li> <li>※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li> <li>※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li> </ul>
<p>9. 발포 합성수지</p>	<p>· 스티로폼 완충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li> <li>※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li> <li>※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li> </ul>
<p>10. 형광등, 건전지</p>	<p>· 막대형, 원형, 삼과장 전구, 컴팩트형, 안전 내장형(백열등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 배출</li> </ul>

별표3

총량제봉투 가격(제20조 제2항 관련)

1. 일반총량제 봉투

○ 생활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 원 )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3L	80	90
5L	120	130
10L	220	250
20L	440	490
30L	660	740
50L	1,100	1,250
75L	1,650	1,880

○ 사업장폐기물용

용 량	판 매 가 격 ( 원 )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50L	1,800	2,000
75L	2,700	3,000

2. 특수총량제 봉투

용 량	판 매 가 격 ( 원 )	
	2015.10. 1. ~ 2016.12.31.	2017. 1. 1. ~
20L	1,840	2,040
50L	4,590	5,100